

의안번호 제124호

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18. 11. 19.

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124호 제출연월일: 2018. 11. 19. 제 출 자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「지방재정법」에서 관련 조항(제95조)이 삭제되고(2016. 5. 29.) 「지방 회계법」제50조에서 관련 조항이 등재됨.(2016.5.29.) 이에 따라 관련법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
-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중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추가된 회계책임관(개정 2017.3.30.)과 통합지출관(신설 2015.4.30.)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부합하도록 정비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 95조를 「지방회계법」 50조로 수정 (안 제1조, 안 제7조)
- 나. 명시된 회계 관계공무원(징수관, 재무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 관리관, 부채관리관, 지출원,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)에 **회계책임관**과 **통합지출관**을 추가 명시 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
(2) 성별영향분석평가: 개선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- (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 - (가) 예고기간: 2018. 10. 17. ~ 2018. 11. 06.(20일간)
 - 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(5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- (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회계과(041-635-3647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"「지방재정법」제95조"를 "「지방회계법」제50조"로 한다.
제2조 중 1항 "징수관, 재무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부채관리관
지출원, 출납원,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"를 "회계책임관, 징수관, 재무관,
채권관리자, 통합지출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부채관리관, 지출원, 출납원과
그 대리자 및 분임자"로 한다.

제7조 중 "「지방재정법」제95조"를 "「지방회계법」제50조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	관 부	- 서		j	성	명
입	회	계	과	장	김	용	희
안	경	리	팀	장	김	영	기
자	담	Ę	:} :}	자	길 (041	-746-	<u>র</u> 5483)

□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지방재</u>	제1조(목적)
정법」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	계법」제50조
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	
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회계관계공무원) 이 조례에	제2조(회계관계공무원)
서 "회계관계공무원"이라 함은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사람을 말한다.	
1. 징수관, 재무관, 재산관리관,	1. 회계책임관 , 징수관, 재무관,
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부채	채권관리자, 통합지출관 , 재산
관리관, 지출원, 출납원과 그	관리관, 물품관리관, 부채관리
대리자 및 분임자	관, 지출원, 출납원과 그 대리
	자 및 분임자
2.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	2
이상 1억원 이하	
제7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	제7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
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<u>「지</u>	<u>「ス</u>]
<u>방재정법」제94조</u> 에 따른 변상	<u> 방회계법」제50조</u>
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	
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	
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	
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	
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	
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	

한다.	.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붙임

비용추계서

- 1. **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 해당없음
- 2. 비용추계결과가. 추계의 전제 해당없음
 - 나. 추계결과 해당없음
- 3. 작성자

회계과장 김용희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「지방회계법」제50조

제50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

- ① 회계관계공무원(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 할 수 없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「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(표준안)」

제3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

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,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.

〈시・도〉

- 1. 본청
- 가. 회계책임관 회계업무담당실·국장, 회계부서에 실·국장직제가 없는 시· 도는 기획조정실장
- 나. 징수관 세입업무담당 국장(단,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)
- 다. 분임징수관 세입업무담당과장,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실 · 과장
- 라. 재무관 회계업무담당국장, 회계부서에 국장직제가 없는 시ㆍ도는 회계업무

담당과장(단,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)

- 마. 분임재무관 회계부서에 국장직제가 있는 시도는 회계업무담당과장(단,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장), 각 실·과장(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)
- 바. 총괄채권관리관 세입업무담당 국장
- 사. 채권관리관 각 실·본부·국장
- 아. 총괄부채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(국)장
- 자. 부채관리관 각 과장
- 차.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(국)장
- 카.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
- 다. 지출원 재무・지출업무담당(단, 소방본부는 재무・지출・회계업무담당 소 방령)
- 파.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업무담당,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
- 하.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
- 갸.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재무・지출・회계 업무담당자
- ※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(이하 같음)
- 2. 지방의회
- 가. 징수관 사무처장
- 나. 재무관 사무처장
- 다. 분임재무관 총무담당관(의사담당관, 주무전문위원은 일상경비에 한함)

- 라. 채권관리관 사무처장
- 마. 부채관리관 총무담당관
- 바. 지출원 재무 · 지출업무담당
- 사.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담당
- 아. 일상경비출납원 총무업무담당(본청 일상경비에 한함), 의정(의사)업무담당, 주무전문위원실 재무업무담당
- 자. 세입・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・지출업무담당자
- 3. 제1관서
- 가. 징수관 소방본부장, 관서의 장,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 장 또는 국장
- 나. 분임징수관 세입업무담당과장
- 다. 재무관 소방본부장, 관서의 장,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 장 또는 국장(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)
- 라. 분임재무관 회계담당과장(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), 각 실·과장(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)
- 마. 채권관리관 소방본부장, 관서의 장,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
- 바. 부채관리관 관서의 장, 부소장 또는 국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장
- 사. 지출원 재무·지출업무담당
- 아.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
- 자.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·과 서무업무담당
- 차.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

- 4. 기타관서 · 임시관서
- 가. 징수관 관서의 장
- 나.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
- 다.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
- 라. 부채관리관 관서의 장
- 마.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과장, 과장직제가 없는 청・소는 세입업무담당
- 바. 일상경비출납원 서무업무담당과장,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 (자)
- 사.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서무업무담당
- 5. 삭제 <14·11·14>

〈시・군・자치구〉

1. 본청

- 가. **회계책임관** 회계업무담당실·국장, 회계부서에 실·국장 직제가 없는 시· 군·자치구는 기획실장
- 나. 징수관 부시장, 부군수, 부구청장, 국장직제가 있는 시·자치구는 세입업무 담당국장
- 다. 분임징수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, 세외수입업무 주관실 · 과장
- 라. 재무관 부시장, 부군수, 부구청장, 국장직제가 있는 시·자치구는 회계업무 담당국장
- 마.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, 각 실·과장(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

지정한 경비)

- 바. 총괄채권관리관 부시장, 부군수, 부구청장, 국장직제가 있는 시·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
- 사. 채권관리관 소관 실·과장
- 아. 총괄부채관리관 부시장, 부군수, 부구청장, 국장직제가 있는 시·군·자치 구는 예산업무담당실(국)장
- 자. 부채관리관 소관실 · 과장
- 차.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(과)장
- 카.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
- 타. 지출원 회계·재무·지출업무담당
- 파.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
- 하.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·과 서무업무담당
- 갸.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
- 2. 지방의회
- 가. 징수관 사무국(과)장
- 나. 재무관 사무국(과)장
- 다. 채권관리관 사무국(과)장
- 라. 부채관리관 사무국(과)장
- 마. 지출원 의정(사)업무담당
- 바.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
- 3. 제1관서(읍・면・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)

- 가. 징수관 관서의 장
- 나. 분임징수관 세입담당과장
- 다. 재무관 관서의 장(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)
- 라. 분임재무관 회계담당과장(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), 각 실·과(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)
- 마.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
- 바. 부채관리관 관서의 장
- 사. 지출원 재무업무담당
- 아.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
- 자.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·과 서무업무담당
- 차.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
- 4. 기타관서 · 임시관서
- 가. 징수관 관서의 장
- 나.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
- 다.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
- 라. 일상경비출납원 서무업무담당과장,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(자)
- 마. 수입금출납원 서무담당과장,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
- 바.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서무업무담당

- 5. 읍 면 동
- 가. 징수관 읍・면・동장
- 나. 재무관 읍 면 동장(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)
- 다. 채권관리관 읍 면 동장
- 라. 지출원 읍·면·동의 재무업무담당(과장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 장,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)
- 마. 수입금출납원 세무·재무업무담당
- 바.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
- 사.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(다른기 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)
- 6. 읍 · 면의 출장소(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)
- 가. 분임재무관 소장
- 나. 일상경비출납원 재무업무담당
- 다.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총무업무담당